

투자권유준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트러스트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일반투자자인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가. 투자권유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1) 정보제공고객 : 별지 제1호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일반투자자

(2) 정보미제공 고객 : 회사가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

나.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4.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에 따라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

를 말한다.

5. “온라인 증권거래”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등 유·무선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6. “포트폴리오 투자”란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할 것
 - 나.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회사 또는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7. “파생상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파생결합증권
 - 다.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나목의 증권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제3조(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③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편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1장 공통 투자권유 준칙

제4조(투자권유의 원칙)

회사 및 임직원등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등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제5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① 임직원등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별지1의 Part I) 평가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기초정보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평가결과 투자성향”이라 한다)과 고객의 위험선호도(별지 1의 PartⅡ)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위험선호 투자성향”이라 한다)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험선호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선호 투자성향이 평가결과 투자성향보다 높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별지 제3호를 참조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라목의 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임직원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⑦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관련기록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 희망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권유 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등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별지 제4호 참조),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성을 다시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별지 제5호 참조)

④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이하 이항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3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원금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2.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원금손실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⑤ 임직원은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공한 고객이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성을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에 관한 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설명 및 위험고지)

① 임직원등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 “투자유의사항”이라 한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권유의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는 다음의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별 또는 계약의 종류별로 각각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5. 고객(전문투자자와 신용거래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7.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행위

제9조(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한 금지행위 등)

임직원등은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를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증권
2. 증권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증권
3.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 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
4. 신용거래 및 예탁재산 규모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권거래
5. 파생상품등

제10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고객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실명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

-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동법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사가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제2장 집합투자증권

제15조(투자권유창구 등의 표시)

- ① 회사는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상 특정 국가·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특정 국가·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설명의무)

-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대상 자산 및 주요 투자전략
 3.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최대손실 가능금액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방법, 환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등 환매에 관한 사항
 5. 고객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또는 수수료
 6.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시 공시에 관한 사항
- ②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각각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 헤지 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3.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증시상황 등의 특징
 4. 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환율이 환 헤지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고객이 직접 환 헤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법 제229조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 및 투자

위험

2. 기타 해당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

- ⑤ 회사는 제3항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임직원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증권시장 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①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가 관계법령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인력현황 및 판매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동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및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투자권유 임직원등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투자권유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의 준수 및 민원발생 여부 등 판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적합성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연계판매)

임직원등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판매나 계약의 체결, 기타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이하 “연계판매”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거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2.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또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
- 3. 고객에게 환매제한 등의 부당한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
- 4. 집합투자증권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제19조(자금납입의 제한)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집합투자증권취득자금을 수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2.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3. 자금의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제20조(집합투자기구 판매와 관련한 금지행위)

회사 및 임직원등은 집합투자기구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고객(일반투자자)을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게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회사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회사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을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제3장 투자권유대행인

제21조(위탁계약의 체결)

- ① 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범위
 2.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3.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이 준칙을 준수한다는 내용

제2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6.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8.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11.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2.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4.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5. 고객이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6.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7.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18. 고객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행위

19.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1.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고객이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기타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별표 1의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2.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로 한다.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금융투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편 금융투자회사별 투자권유준칙

제1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준칙

제24조(계약의 체결)

① 임직원은 고객(일반투자자)과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미리 고객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등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4편 보칙

제26조(점검)

회사는 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

- ① 회사는 집합투자증권 세부 판매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는 집합투자증권 표준 판매절차를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등의 표준판매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본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고객님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펀드를(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해 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의 가장 적합한 펀드(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잘못된 답변 또는 불성실한 답변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님의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존정보 변경여부>

☐ 기존정보와 동일	☐ 정보 변경
-----------------------------------	--------------------------------

<기초정보>

PART 1		배점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19세 이하 ☐ 20세 ~ 40세 ☐ 41세 ~ 50세 ☐ 51세 ~ 60세 ☐ 61세 이상	
2. 고객님의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	

	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율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 고객님께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십니까?	☐ 10% 이하 ☐ 10% 초과 ~ 20% 이하 ☐ 20% 초과 ~ 30% 이하 ☐ 30% 초과 ~ 40% 이하 ☐ 40% 초과	
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	---	--

<위험선호도>

PART 2	
8.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필요시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기타>

PART 3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투자기간 (년 월)

주의사항

본 투자자 질문지는 트러스트자산운용주식회사에서 제공되었으며, 동 투자적합성 평가의 결과는 고객님의께서 제공하신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님의에게 적합한 펀드를(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 만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저의 금융회사에 의하여 기밀로 보호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PART I 결과	SCORE 합계 -
☐ 안정형	20점 이하
☐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PART II 결과	
최종 투자자 리스크(위험) 등급	

본인은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성향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성명	서명/인	날짜	년	월	일
--------	------	----	---	---	---

※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 희망	○ 고객정보 제공 ○ 고객정보 미제공
☐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한 경우)

본인은 상기 투자자정보 확인서상의 내용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 : 년 월 일

고객명 : (인 또는 서명)

트러스트자산운용주식회사(주) 상담자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방법>

☐ 문항별 배점

- 1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6점
- 8번 : 배점은 없으며, 투자자의 선택 결과를 적용

□ 점수 계산 방법

- PART 1,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26\text{점}/32\text{점} \times 100 = 81.3\text{점}$

- PART 2 선택 결과를 적용

(예) 안정형, 적극투자형 등

- PART 1과 PART 2 결과 중 하위 값 적용

(예)- PART 1 적극투자형, PART 2 위험중립형인 경우 → 위험중립형 등급 적용
- PART 1 안정추구형, PART 2 위험중립형인 경우 → 안정추구형 등급 적용
- PART 1 위험중립형, PART 2 위험중립형인 경우 → 위험중립형 등급 적용

□ 등급 부여

- 점수 계산 결과에 따라 1단계 ~ 5단계 등급 중 부여

- 20점이하 : 안정형
-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별지 제3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

<별지 제4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투자자 확인서>

☐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거부 확인

본인은 트러스트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본인이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시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고 본인이 지정하는 펀드를 매수(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펀드를(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을)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펀드에 투자(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회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일자 :

· 고객의 서명 :

□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

본인은 트러스트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위험 수준의 펀드를(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른 본인의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펀드를 매수(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회사로부터 본인이 지정한 펀드(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해당 펀드(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투자위험 정도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본인에게 부적합하므로 회사가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펀드에 투자(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 펀드 투자와(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투자권유도 받지 않았으며, 상기 거래가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 처리도 회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일자 :

· 고객의 서명 :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

본인은 트러스트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에 대한 투자권유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일반 임직원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업무상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할 수 없으며 회사가 직접 수취합니다.
3.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습니다.
4.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지 못합니다.
6.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지 않습니다.
7.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8.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9.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0.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받을 수 없습니다.
1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12.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14.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15. 고객이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아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16.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17.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18.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할 수 없습니다.
19.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의 투자권유 이외에는 다른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또는 실장 등의 명칭·명함 또는 표지 등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을 회사 임직원으로 오인하게 할 수 없습니다.